







Chapter 3.

DDA 환경의제

DDA 환경의제 /

1. DDA 환경의제 구성

□ 도하개발아젠다 환경의제 구성

구분	내용
협상의제 (각료선언 3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자환경협약(MEAs) 상 무역조치와 WTO 무역규범과의 관계  다자환경협약(MEAs)과 WTO의 정기적 정보교환 절차  환경상품 및 서비스 교역자유화에 대한 협상
검토의제 (각료선언 3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의 상호작용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환경측면  환경목적의 라벨링 요건에 대한 검토

DDA 환경의제 /

2. 협상의제 1, 각료선언 31조 1항

□ WTO 규칙과 MEA 특정무역의무간의 관계

<< Paragraph 31(i) >>

- 무역과 환경의 상호 보완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각각의 결과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다음의 협상안에 동의한다.
 - (i) WTO 기존 규칙(existing WTO rules)과 MEA 특정 무역의무(specific trade obligations set out in MEAs)와의 관계. 협상안은 MEA 당사국에 대해 WTO 기존 규정 적용(applicability of such existing WTO rules) 범위에서 제한된다. 협상안은 MEA 비당사국(Member that is not a party to the MEA in question)의 WTO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협상의제 1항은 다자간 환경협약상 특정무역의무와 WTO 규범의 합치 문제로 환경과 무역의 상호보완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정하였음.
- 협상범위는 WTO 당사국임과 동시에 MEA 회원국에 대한 기존 WTO 규범 적용문제로 한정, MEA 비 당사국인 WTO 회원국의 제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협상의 여지가 상당히 축소된 인상을 남김.

DDA 환경의제 /

2. 협상의제 1, 각료선언 31조 1항

□ 무역조치를 수반한 **MEA** 예 – **CITES, Montreal** 의정서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CITES협정은 부속서에 정한 특정 야생동식물 및 종에 대하여 수출입 허가제도를 통하여 협약에 규정된 목적을 벗어난 국제거래를 규제하며 비당사국과의 거래는 협약조건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인정
 - CITES협약상의 무역조치는 협약상의 거래규제, 비당사국과의 거래규제, 협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로 크게 3가지임.
 - 그러나 동 협약은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만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국내거래에 대한 규제는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짐.
- 몬트리올 의정서
 - 오존층 보호를 위한 개별규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 비엔나 협약의 후속조치로, 오존과 피물질의 생산과 소비의 감축 및 전폐를 목적으로 하는 세분화된 국제기준을 규정
 - 의정서상의 무역조치는 비당사국과의 수입 및 수출 금지, 규제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수입 금지를 부과하고 있으며, 의무 불이행국에 적용되는 기사용, 재활용, 재생품의 수출금지, 회원국간 교역을 위한 허가제, 기능상 ODS를 필요로 하는 제품의 회원국간 교역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음

DDA 환경의제 /

2. 협상의제 1, 각료선언 31조 1항

□ 무역조치를 수반한 MEA 예 – Basel 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 바젤 (Basel) 협약
 -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협약으로 유해폐기물의 생산 및 국가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의 이동시 발생 가능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그 교역 및 이동절차를 통제하는 규정을 내포하고 있음.
 - 유해폐기물 수출입에 있어서 폐기물 수입금지국은 수입금지폐기물의 목록을 다른 당사국에게 통보해야하며, 사전통보승인절차(Prior Informed Consent, PIC)에 따라 수입국이 금지를 선언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출은 수입국의 서면동의를 허가요건으로 하고, 수입국(또는 경유국)은 수출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입각하여 유해폐기물을 자국 내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보장.
 - 회원국은 폐기물의 불법거래를 범죄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처벌조치를 취해야 함.
- 생물다양성 협약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지구상의 생물 종 감소 요인들 - 인구증가, 상업적 목적의 자원남용, 외래종 도입, 야생동식물의 남획, 각종 개발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자연 서식지의 변화와 파괴에 대하여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채택
 - CBD는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재산권을 인정하여 생물자원의 국제교역에 일정한 영향을 미침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따른 안전성 보장을 목적으로 채택된 부속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tocol)”를 통해 과학적 정보 및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과학적인 확신이 없는 경우에도 수입국은 그 잠재적 악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DDA 환경의제 /

2. 협상의제 1, 각료선언 31조 1항

□ 무역조치를 수반한 **MEA** 예 – 기후변화에 관한 **UN** 협약

-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1992년 리우회의를 계기로 채택되었으며, 기본협약과 교토의정서(부속의정서)로 구성
 - 동 협약은 에너지 소비의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이 급증하게 되면서 지구대류권의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의 결과이며, 기후체계가 위협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감축시키는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함.
 -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각 국의 의무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모든 협약 당사국에 대한 일반 의무사항과 부속서 I, II 등재 선진국에 대한 특정 의무사항을 구분
 - 기후변화협약은 근본적으로 환경문제를 다루는 것이나, 온실가스 배출이 경제활동 특히 철강, 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 사용에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최근 국제 환경통상 현안의 선두에 있음.
 - 동 협약은 직접적인 무역규제 조항은 없으나, 저감목표 달성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품 및 생산 공정 등에 강화된 에너지효율기준을 적용하여 기준미달제품에 대한 직접적 수출입 규제를 가능케 함.
 - 화석연료의 사용에 대한 에너지세, 탄소세의 도입 등도 연료 효율적 생산과정의 도입 촉진과 기후변화 관련 비용의 내부화를 통해 국가 간 무역에 있어서 경쟁적 지위변화를 가져와 간접적 무역규제효과 야기 가능

DDA 환경의제 /

3. 협상의제 2, 각료선언 31조 2항

□ **MEAs** 사무국과 관련 **WTO** 의 정례적 정보교환 및 옵서버 지위 부여

<< Paragraph 31(ii) >>

무역과 환경의 상호 보완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각각의 결과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다음의 협상안에 동의한다.

(ii) MEA 사무국과 관련 WTO 위원회간의 정기적 정보 교환 절차와 옵서버 지위 부여 기준

- 국제환경규범과 자유무역규범간의 상호협력관계를 강화할 목적에서 제안된 것으로 개별 회원국의 특정한 이해관계를 내포하고 있지 않음

DDA 환경의제 /

4. 협상의제 3, 각료선언 31조 3항

□ 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

<< Paragraph 31(iii) >>

무역과 환경의 상호 보완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각각의 결과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다음의 협상안에 동의한다.

(iii) 환경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의 감소 또는 철폐

- 동 의제는 환경상품 및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을 촉진함으로써 여타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확대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화를 비용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음.

DDA 환경의제 /

4. 협상의제 3, 각료선언 31조 3항

□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 이슈

- 환경상품의 정의
 - OECD/Eurostat의 환경산업의 정의 및 분류방법에 따르면 환경산업은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토양, 생태계 등에의 환경피해를 측정, 예방, 처리, 복원하기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활동”이라고 정의(환경용도에 따른 정의)
 - EBI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는 환경산업을 산업활동의 행태적 특성에 따라 환경설비(equipment), 환경용역(services), 자원이용(resources)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
 - 우리나라: 환경산업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을 응용·활용해 환경시설 및 환경측정기구 등을 설계, 제작, 설치하거나 환경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규정
- 기초협상자료 (환경상품리스트) 선정: APEC, OECD list, 일본, 중국 등 개별국 제안 리스트
- 분류방식: 친환경상품의 분류수준, PPM(생산공정 및 생산방식)의 친환경성 제품의 수용여부, 물질특성 고려여부, 상대적 환경친화성의 평가기준, 관세코드 표시방식 외..
- 협상방식: 단일리스트 선정 및 일괄 시장개방 협의, 복수리스트 작성 및 차별화된 시장개방 협의 방식 등
- 관세인하수준 결정: 비농산물시장접근그룹에서 합의한 관세인하방식의 적용 또는 환경상품에 대한 특별 관세인하 조치 외..

DDA 환경의제 /

4. 협상의제 3, 각료선언 31조 3항

□ 환경서비스 자유화 협상

- DDA 서비스협상의 포괄적 합의사항

구 분	주요 합의 내용
협상목표	•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
협상범위	• 모든 서비스 분야를 포함
협상방식	• Request & Offer 방식을 원칙, 복수 및 다자간 방식 가미
협상일정	• 일반이사회 결정에 따라 서비스이사회에서 진행
개도국 우대	•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 부여 등 개도국 관심사항을 폭넓게 반영

- 2002년 이후 환경서비스 일정에 따라 협상 진행, 대상국에 대한 시장개방요구서 제출 및 시장개방 요구서 접수 후 양자 및 다자간 방식으로 협상
- 협의된 기간 내 양허제안서 작성 및 제출 방식

DDA 환경의제 /

4. 협상의제 3, 각료선언 31조 3항

□ 참고사항: **WTO DDA** 와 **FTA**에서의 서비스 협상 비교

WTO DDA
Mode1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Mode2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Mode3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Mode4 자연인의 이동(movement of natural persons)

VS

FTA
Chapter. investment
Chapter. Services
Chapter. Others or annex

FTA 당사국 서비스 무역제한조치 및 의무사항

- 내국민대우 – National Treatment
- 최혜국대우 – Most-Favored-Nation Treatment
- 시장 접근 – Market Access
- 현재주재 – Local Presence
- 이행의무 – Performance Requirement
- 고위 경영자 및 이사회 –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s

WTO DDA 서비스 교역 규제

- 시장접근 – Market Access
- 내국민 대우 – National Treatment

DDA 환경의제 /

5. 검토의제 1, 각료선언 32조 1항

□ 환경과 무역 및 개발의 연계

<< Paragraph 32(i) >>

CTE는 소관의제에 대한 작업범위에 대해 다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i) 환경조치의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 관련 시장접근효과와 무역제한 및 왜곡의 제거가 무역, 환경, 그리고 개발에 유익한 상황

- 환경조치가 개발도상국의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 및 무역왜곡조치의 제거가 미치는 긍정적 환경과급효과에 대한 협의사항을 다룸.

DDA 환경의제 /

5. 검토의제 1, 각료선언 32조 1항

□ 환경과 무역 및 개발의 연계 협상논의 이슈

- 검토의제 1(a): 환경조치의 시장접근효과
 - 현재 구체적 쟁점이 부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5차 각료회의의 결과)
- 검토의제 1(b): 무역왜곡(보조금) 제거의 환경편익
 - 농업, 수산업 보조금과 자원고갈 및 환경파괴의 연관성 논쟁 계속
 - 규범협상그룹과 CTE 간 중복논의(도하각료선언상) 우려제기, 의관 소제(mandate)에 대한 회원국간 입장 상이
 - 각국 환경부처 관심: 보조금(농업 및 수산업)의 환경파급효과 검토, 환경보조금 논의에 대한 대응입장 수립

DDA 환경의제 /

6. 검토의제 2, 각료선언 32조 2항

□ TRIPs 협정과 환경과의 관계

<< Paragraph 32(ii) >>

CTE는 소관의제에 대한 현행 작업범위 다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ii) TRIPs 협정의 (환경) 관련 조항 (the relevant provisions)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상의 환경관련 특정 조항에 관한 문제는 주로 생물다양성 혹은 생물유전자원 보유국의 자원주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의 제한 및 남용을 억제하고 국제적 기술이전의 촉진을 위한 강제실시권 (compulsory licencing) 실시요건 완화와 같은 지적재산권 협정의 개정논의에 집중, 당사국간 이해관계에 따라 상당한 논란 예상

DDA 환경의제 /

6. 검토의제 2, 각료선언 32조 2항

□ 논의 대상 **TRIPs** 환경관련 조항

<<TRIPs 27.3(b)>>

(b) 미생물이 아닌 식물과 동물, 그리고 비생물학적 및 미생물학적인 공정이 아닌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공정. 그러나 회원국은 식물의 변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 혹은 실질적인 별도의 보호제도, 또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마련할 수 있다. 이 호(3항의 (b))는 WTO 협정 발효 후 4년 이후에 재검토하기로 한다.

DDA 환경의제 /

6. 검토의제 2, 각료선언 32조 2항

□ TRIPs 27조 3항 (b)의 재검토 관련 6개 쟁점

1. 27조 3항 (b)와 발전(development)문제의 연계
2. 27조 3항 (b)하의 특허보호에 관련된 기술적 문제(미생물의 범위, 특허가능범위)
3. 식물변종에 대한 별도보호(sui generis protection)의 의미
4. 생명체 특허에 관한 윤리적 문제
5. 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과의 관계(TRIPs와 CBD 간 관계)
6. 전통지식, 종자에 관한 재배자 권리(farmers' right)

DDA 환경의제 /

7. 검토의제 3, 각료선언 32조 3항

□ 환경목적의 라벨링

<< Paragraph 32(iii) >>

CTE는 소관의제에 대한 현행 작업범위 다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iii) 환경목적의 라벨링 요건

- 그동안 WTO 무역환경 논의에 있어서 GMO 상품에 대한 라벨링과 같은 환경 및 보건관련 라벨링의 시장접근 효과를 둘러싸고 EU 및 개발도상국과 미국 중심의 비 EU 선진국 간의 첨예한 의견대립 의제로 발전
- 협상의제에 포함시키고자 했던 EU의 입장과는 달리 검토의제로 포함됨.

DDA 환경의제 /

7. 검토의제 3, 각료선언 32조 3항

□ 환경목적의 라벨링 협상 이슈

- 특정 부문(ex: 비제품관련 생산공정)에 근거한 환경라벨링제도의 국제적 공인을 유도하는 EC 및 일부 선진국 의견 논란제기, 구체적 진전 없음.
- 각국의 전략 및 노력: ISO를 비롯, 국제기구의 논의동향 조사, 부정적 효과 최소화 위한 대응방안 모색, TBT위원회 유관 논의 동향 분석
 - 환경라벨링 관련 WTO/CTE 및 TBT 논의 동시 분석
 - 개별국 환경라벨링 실시현황조사
 - NPR-PPMs & LMOs 라벨링 등 협상의제화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